

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날로 증가하는 주차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종전 내집안 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대상 및 보조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대상을 일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함 (안 제3조제1항, 제4조).
- 나. 내집안 주차장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제2항).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4. 04. 03. ~ 2004. 04. 23. 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내 집안 주차장 추진계획 및 현황

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중 “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(다세대)주택의 대문, 담장을 개조하여”를 “일반 주거지역 또는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또는 대문 및 담장 등을 철거·개조하여”로 하고 “설치비용의 일부”를 “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”로 한다.

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기타 일반 주거지역 또는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대문 및 담장 등을 철거·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및 비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교통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통행정과장 김영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통시설담당 최시영
	담당자 성명·전화	신문호 (행정2294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(세출)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	제3조 (세출) ①----- -----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(다세대)주택의 대문,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</u>	5. 일반 주거지역 또는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또는 대문 및 담장 등을 철거·개조하여----- ----- <u>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-----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조 (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) 제3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	제4조 (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) --- -----
1. ~ 3. (생 략)	1.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4. 기타 일반 주거지역 또는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대문 및 담장 등을 철거·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
제5조 (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방법) ① (생 략) ② <u>내집앞주차장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80% 이내로 한다.</u>	제5조 (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및 비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u>